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윤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554

발의연월일: 2024. 8. 5.

발 의 자:김윤덕·조인철·이기헌

이춘석 • 윤준병 • 박해철

허 영・김교흥・임오경

안태준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 박물관·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박물관·미술관 설립·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, 현행법에서 지역사회 자료의 구입·관리·보존·전시 및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립 박물관과 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도록 규정하면서, 공립 박물관및 공립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, 공립 박물관 및 공립 미술관 설립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규정함에따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문화기반시설 건립에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직접 실시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특성을 반영한 공립 박물관 및 공립 미술관을 설립하여 지역주민의문화향유권을 증진하고, 지방분권 강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및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12조의2).

법률 제 호

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2조의2(공립 박물관·공립 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) ① 제3 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·공립 미술관 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 평가(이하 "사전평가"라 한다)를 실시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사전평가 및 협의 방법·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공립 박물관·공립 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에 관한 적용 례)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공립 박물관 또는 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혀 행

제12조의2(공립 박물관·공립 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)
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조 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·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박물관·미술관 설립·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(이하 "사전평가"라 한다)를 받아야 한다.
② 사전평가의 절차, 방법 등에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개 정 안

제12조의2(공립 박물관·공립 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)
①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·공립 미술관을 설립하고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(이하 "사전평가"라 한다)를 실시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협의를 거쳐야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사전평가 및 협의 방법·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